

고성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60

제출년월일 : 2004. 2. 11.

제출자 : 고성군수

1. 제안이유

상족암군립공원내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공룡전시관이 준공됨에 따라 공룡전시관의 관람요금 및 징수기준을 마련하고 샤워장 시설에 대하여도 사용료 및 징수기준을 마련하여 공원관리 및 운영에 효율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년과 일반인의 용어의 정의 변경(안 제3조)
- 공룡전시관 관람료의 징수기준 및 서식에 관한사항(안 별표3, 별지제2호)
- 샤워장의 시설사용료에 대한 징수기준 및 서식에 관한사항(안 별표3, 별지제2호)

3. 참고사항

- 자연공원법, 동법시행령 및 고성군립공원관리조례
- 입법예고 : 고성군공고40호(2004. 2. 5-2004. 2. 27)▶특기할 사항 없음
-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 심의 (2004. 2. 25)

4. 본문 : 붙임과 같음

고성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립공원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24세 이하”를 “19세미만”으로 하고, 동조 제3호중 “하사이하의 군인”을 “일반사병”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25세”를 “19세”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법제26조제3항”을 “법제37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주차권”을 “시설사용권”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이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이조례에서----- -----
1.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	1.어린이 : ----- -----
2.청소년 : 13세이상 24세이하인 자	2.청소년 : -----19세미만---
3.군인 : <u>하사이하의 군인과 전투 경찰, 의무경찰</u>	3.군인 : <u>일반사병</u> ----- -----
4.일반인 : 25세이상 64세이하인 자	4.일반인 : 19세-----
5.노인 : 65세이상인 자	5.-----
6.단체 : 30인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6.----- -----
7.~9. (생략)	7.~9. (현행과 같음)
제1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제1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①군수는 <u>법제26조제3항</u> 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①----- <u>법 제 37 조 제 3 항</u> ----- ----- ---
②~⑤(생략)	②~⑤ (현행과 같음)
⑥ <u>주차권</u> 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⑥ <u>시설사용권</u> -----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별표 3](현 행)

시설사용료 요금표

(단위:원)

시 설	구 분	당 일	체류(숙박)	비 고	
주차장	이륜차	500	1,000		
	승용차	영업용	1,000	1,500	
		비영업용	2,000	3,000	
	버 스	마이크로버스	2,000	4,000	
		비정기버스	3,000	5,000	
	화물차	4톤미만	1,500	3,000	
4톤이상		2,000	4,000		
야영장	소형 천막	2,000		1일당	
	대형 천막	4,000		1일당	

[별표 3](개정안)

시설사용료 요금표

(단위 : 원)

시 설	구 분	당 일	체 류 (숙박)	비 고	
주 차 장	이 료 차	500	1,000		
	승 용 차	영 업 용	1,000	1,500	
		비영업용	2,000	3,000	
	버 스	마이크로버스	2,000	4,000	
		비정기버스	3,000	5,000	
	화 물 차	4톤미만	1,500	3,000	
		4톤이상	2,000	4,000	
야 영 장	소 형 천 막	2,000		1일당	
	대 형 천 막	4,000		1일당	
공 통 전 시 관	개 인	일반인	3,000		
		군인, 청소년, 학생	2,000		
		어린이	1,500		
	단 체	일반인	2,500		
		군인, 청소년, 학생	1,500		
		어린이	1,000		
샤 위 장	일반인, 군인, 청소년, 학생	1,000		1회당	
	어린이	500		1회당	

※ 일반인이라함은 19세이상 64세이하인 자로서 군인, 청소년, 학생이외의 자를 말한다.

학생이라함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포함)을 말한다.

어린이라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단체라함은 30인이상 단체의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별지2호 서식](현 행)

주 차 권 서 식

주 차 권 (원부)	주 차 권 (영수증)
일련번호	일련번호
상 족 암 군 립 공 원	상 족 암 군 립 공 원
차 종	차 종
요 금	요 금
주차시간 :	주차시간 :
년 월 일	년 월 일
고 성 군 수	고 성 군 수

[별지 제2호서식](개정안)

시설사용권 서식

<p>주 차 권 (원부) 일련번호 상족암군립공원 차 종 요 금 주차시간 : 년 월 일 고 성 군 수</p>	<p>주 차 권 (영수증) 일련번호 상족암군립공원 차 종 요 금 주차시간 : () 원 년 월 일 고 성 군 수</p>	<p>※ 군립공원 및 공룡전시관 주요경관사진 또는 안내도</p>
--	---	--

<p>샤 위 권 (원부) 일련번호 상족암군립공원 () 원 년 월 일 고 성 군 수</p>	<p>샤 위 권 (영수증) 일련번호 상족암군립공원 () 원 년 월 일 고 성 군 수</p>	<p>※ 군립공원 및 공룡전시관 주요경관사진 또는 안내도</p>
--	---	--

※ 샤워권은 당일에 한해 유효합니다.

<p>관 램 권 (원부) 일련번호 상족암군립공원 공 룡 전 시 관 () 원 년 월 일 고 성 군 수</p>	<p>관 램 권 (영수증) 일련번호 상족암군립공원 공 룡 전 시 관 () 원 년 월 일 고 성 군 수</p>	<p>※ 군립공원 및 공룡전시관 주요경관사진 또는 안내도</p>
---	--	--

※ 관람권은 당일에 한해 유효합니다.

<p>단체 관람권 (원부) 일련번호 상족암군립공원 공 룡 전 시 관 () 원 년 월 일 고 성 군 수</p>	<p>단체 관람권 (영수증) 일련번호 상족암군립공원 공 룡 전 시 관 () 원 년 월 일 고 성 군 수</p>	<p>※ 군립공원 및 공룡전시관 주요경관사진 또는 안내도</p>
--	---	--

※ 비고 : ()안에는 일반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등으로 표기할 것